

特許와 獨禁法の 運用

— 美의 處理가 가장 先進的 —

美國에서는 特許侵害訴訟 등에 있어 被告가 特許權者인 原告를 걸어 獨禁法 違反으로 提訴 抗辯하는 事例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餘他 國家에서는 稀貴할 정도라는 것이 常特化되어 있다.

獨禁法 違反行爲라는 것은 대체로 公正 自由스러운 경쟁의 環境을 파괴하는 行爲이며 이러한 환경 파괴의 行爲者에게는 特許權의 主張을 할 資格이 없다는 思考方인 것이다.

그러나 日本만 해도 이러한 提訴에 대한 判決은 거의 볼 수 없다. 그 理由인즉 辯護士들이 항변을 하지 않는 것이 慣例처럼 되어 있어 판결이 내릴 素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의 이러한 姿勢는 항변을 해도 採擇되지 않으리라는 지레짐작이 아니겠느냐가 一般의인 通念이다.

工業所有權 淸管理制 登場

— 業種別 團體서, 外國情報도 —

요즘 外國에서는 業種別 團體가 工業所有權의 淸管理 또는 海外的 關聯特許情報의 共同蒐集 등 共同特許管理로 成果를 견우는 例가 있다.

특히 日本의 카메라生産業者들의 모임인 光學工業技術研究組合이 組合員들이 갖고 있는 公業소유권을 公開하여 공동 이용하는 制度를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들은 578件의 特許를 淸로 利用하도록 開放하였다는 것이다.

參考로 미국에서는 예로부터 公開된 技術知識은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社會의 共有財産이라는 觀念이 뚜렷하다. 特許發明이 獨占되는 것은 特許法에 規定되어 있기는 하나 그 根底에는 발명은 無에서 생기는 創造物이므로 발명에 特權을 허용하여도 公衆은 아무런 損失이 없다는 사고방식에 根據한 것이다.

만약에 공지기술에 특허를 賦與하면 社會의 共有財産으로서의 自由를 잃게 되어 無效審判을 거쳐 最終적으로 특허무효가 되면 몇해가 걸리게 되므로 當事者의 被害는 莫大하다. 따라서 공지기술의 特權을 허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쓰지 못하게 되므로 기술개발경쟁에 障害가 된다는 意思들이다.

事者間에 協議決定하게 된다. 또한 登錄臺張에는 권리의 名稱, 權利者 姓名 등 必要事項이 記載되어 있어 조합원은 언제나 去來相談이 可能하다.

한편 해외광학기술관련 특허는 美, 英, 西獨, 佛의 4個國 資料를 公告日, 發明의 名稱, 權利者 姓名을 정리하여 備置 供給하고 있다.

서어비스 마크의 法的保護氣運

— 日 特許廳, 企業相對 實態調査 —

最近 日本의 産業界는 企業의 서어비스 마크, 特許일지라도 商標와 同一한 法的保護를 받으려는 傾向이 높아 가고 있다.

先進國들에서는 法的 보호 아래 서어비스 마크가 運用되고 있으나 日本은 不正競爭防止法만이 存在하여 서어비스 마크를 에워싼 紛爭에는 等閑히 하고 있는 傾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特許廳도 企業을 對象으로 서어비스 마크의 使用 實態를 앙케트를 통하여 調査하는 法的 保護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들린다.

또한 서어비스 마크를 기업의 營業支柱로서의 役割의 內容을 表示하는 記號로 생각하고 있다. 例를 들어 NHK, JAL 등이 서어비스業의 마크로 사용되는 것들을 指摘하고 있다.

더우기 商標가 사용되는 商品 즉 自動車, 電氣製品 등에 附着되고 있음에 反하여 서어비스 마크는 業으로 하는 서비스에 부착되므로 兩者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